

『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』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사업자 주거래 우대통장(이하 “이 예금”이라 한다)의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“예금거래 기본약관”과 “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” 및 개별계좌의 해당 예금별 거래약관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은 보통예금,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, MMDA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 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고유(납세)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로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 단, 고유(납세)번호를 부여 받은 임의단체는 보통예금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.

제4조 이자지급

- ①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예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예금의 종류별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(이하 ‘원가일’이라 한다)에 원금에 더합니다.
 1. 보통예금 : 매년 6월, 12월의 제3금요일
 2. 저축예금, 기업자유예금 및 MMDA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- ② 제1항의 예금이자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,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에 게시하는 이율로 계산합니다.

제5조 수수료 우대서비스

- ① 이 예금은 신규가입 시 익월 말까지 아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관계없이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를 제공합니다. 단, 기존 수수료면제 통장 가입고객은 제외하며, 이 예금을 일반통장으로 전환 후 재가입하는 고객 또한 제외합니다.
- ②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를 제공합니다.
 1. BC 또는 하나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
 2. 4대사회보험료(국민연금, 건강보험, 고용보험, 산재보험) 모두 자동이체
- ③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을 제공합니다.
 1. 월평균잔액 50만원 이상 유지
 2. 공과금 2건 이상 자동이체
- ④ 은행은 전월에 이 예금으로 제3항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충족하면서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해 해당월에 수수료 우대서비스 I, II를 제공합니다.
 1.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
 2. 하나카드사의 신용/체크카드 결제
- ⑤ 수수료 우대서비스 I은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합니다.
 1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
 2.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
 3.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
 4.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

- 5.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
 - 6.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
 - 7. 납부자 자동이체(타행자동이체) 거래
- ⑥ 수수료 우대서비스 피는 다음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것으로서 총합 월 10회 제공합니다.
- 1. 창구에서 타행이체 거래
 - 2.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
(은행점포내 자동화기기 또는 은행이 직접 관리하는 점외 자동화기기에 한함)
- ⑦ 전월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공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없이 해당월은 수수료 우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우대서비스 변경

- ① 수수료 우대서비스의 세부 요건은 변경이 가능하며, 은행은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약관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 내용을 영업점,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합니다. 다만,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시행 즉시 이를 게시 또는 공고합니다.
- ② 제1항의 변경 내용이 가입자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, 전자우편, 휴대폰 문자 등 가입자와 사전에 의한 방법으로 변경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(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시행 즉시) 통지합니다. 다만, 기존 가입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입자가 변경 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“가입자는 약관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”라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합니다. 다만, 제1항 단서 사유에 의한 변경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.
- ④ 가입자가 제3항 본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 약관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